

2020년 7월 30일 **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종자생명산업과 과장 김민욱(044-201-2471), 사무관 박영완(2479) / 제공일: 7월 29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『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』 입법예고(7.31.~9.9.)

- 품질인증제 및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, 주요 위반자 처벌 강화 등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「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입법예고('20.7.31.~9.9., 40일간)

○ '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('19.7월)'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 반영

<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>

① 종자(묘목 등)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

- 바이러스 검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종자검정기관 지정
- 허위인증 및 인증표시 위반 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등

② 주요 작물(과수)의 종자 수입 시 신고 의무 신설

③ 종자관리사의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

④ 허위 판매신고자 영업정지 처분, 미등록 종자업자 처벌 강화 등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「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하 '개정법률안'이라 함)을 마련하고 오는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.

○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*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.

*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, 종자 유통질서 건전화, 품종수입 투명화 등을 목표로 12개 과제 추진중

□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·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*를 도입한다(제38조~제48조).

*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(眞僞性)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·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

-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(제62조).
-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·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하여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·과태료를 부과한다(제79조~제81조).

②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·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(제56조).

-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, 불법 증식·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(제28조).

- 종자보증 또는 종자·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·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(제68조).

④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·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·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.

- 품종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(제52조, 제53조).

-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*을 상향한다(제79조).

* 벌칙 : (현행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.

○ 「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,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)의 <국민소통-법령정보-입법·행정예고>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.

참고

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도(안)

